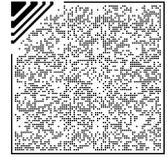


2023 장애인인권



# 디딤돌 걸림돌 판결

보고회: 2023. 10. 31. (화) 오후 2시  
이룸센터 B1층 누리홀

디딤돌 걸림돌 선정위원회

# 선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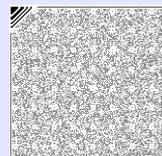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법을 통한 권리 구제에 좌절을 경험하는 장애인에 대해 적극적인 옹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 나아가 사법부를 모니터링 하는 것은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구제가 얼마만큼 진보하고, 또 후퇴하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과제를 남기고 있는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나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연구소는 사법부의 장애에 대한 인식, 그 경향과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장애인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판결과 그렇지 않은 판결을 선정하는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그리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보장하도록 하며, 장애인이 '법 앞에서 평등한 존재'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권리'로 전환되었다고는 하지만, 법을 통하여 보장받는 권리가 아니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권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법은 모두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장애인의 실질적인 법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사업은 아주 중요하다 할 것이며, 사법부의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올해도 연구소는 책임감을 갖고 20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장애 관련 판결문들을 수집하여 수차례의 검토와 선정 과정을 거쳐 디딤돌 걸림돌 판결을 선정·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차별 구제청구 소송의 역사가 길어진 만큼 장애 심사, 이동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 차별'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애를 이유로 한 장기구금, 고용환경에서의 편의 지원 미제공 등 일정 영역에서는 여전히 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 부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판결들을 보면 아직도 사법부는 표면적으로 평등과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장애인을 동등한 권리와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한 편의 판결문은 그저 종이 몇 장이지만 그 속에는 한 사람의 삶이 있으며, 흩어져 있는 판결들을 따라가다 보면 장애인 인권의 현주소가 보일 것입니다. 장애인의 인권은 무엇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나누어 사법부에 의미있는 변화를 일으키길 바라봅니다. 끝으로 판결문을 모으고, 심사하고, 선정해주신 위원님들과 이 사업을 지원해주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 10. 3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노태호**

# CONTENTS

2023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위원 소개 [\\_6](#)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과정 [\\_8](#)

## 디딤돌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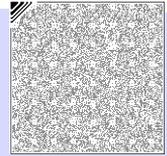
---

- ❶ 극히 일부의 편의점에만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적용되도록 한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편의점의 범위를 확대한 사례 [\\_1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4424 |
- ❷ 피성년후견인이 된 검찰공무원의 명예퇴직 부적격 판정과 관련하여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은 위헌이라고 본 결정 [\\_14](#)  
| 헌법재판소 2020헌가8 |
- ❸ 혼자서 운전할 수 없으리라는 이유로 전동휠체어 교부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_16](#)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999 |
- ❹ 노인성 질병이 있어 장기요양급여를 받던 65세 미만 장애인이 장애인활동보상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경우 그에 대한 거부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조항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임을 확인한 사례 [\\_18](#)  
|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3704/2021구합13698 |

## 걸림돌 판결

---

- ❶ 치료감호를 병자해 발달장애인을 장기 구금한 것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_2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1913 |
- ❷ 전화로만 가능한 진료예약 및 장애인근로자 채용 면접시험에서의 불합격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_26](#)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0165 |
- ❸ 청각장애인(구화인)이 정당한 편의제공 미비를 이유로 장애인모집전형 불합격처분취소 등을 청구하였으나 면접 사항은 면접관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제한적으로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_28](#)  
|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4076 |



- ④ 부모의 이혼 후 부의 주택에서 홀로 거주하던 발달장애인 자녀에게 청구한 소유물 반환청구 소송으로 부가 자녀의 퇴거를 요구하여 인용된 사례 [\\_30](#)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55376 |
- ⑤ 지적장애인의 일일수입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_32](#)  
|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7547/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12414 |
- ⑥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버스와 국가를 상대로 휠체어 탑승설비와 저상버스 도입을 청구하였으나 차별에 대한 판단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한 사례 [\\_34](#)  
| 대법원 2019다217421 |

## 주목할 판결

- ① 사법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한 '읽기 쉬운 (Easy-Read)' 방식의 첫 판결문이었으나, 정작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장애인 채용차별과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은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_40](#)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9381 |
- ②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후속 조치계획이 미비한 상황에서 운영자가 추진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신고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_42](#)  
|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5208 |
- ③ 정신병원이 비자의입원 목적 이송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에 관해 직접원인 중심으로 판단한 사례 [\\_4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8924 |
- ④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대한 적극적, 실질적인 해석을 통하여 장애를 인정한 사례 [\\_48](#)  
|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2022 |

# 2023 장애인 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위원

가나다 순

## 기획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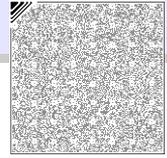
- 김윤진 /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 임한결 / 변호사(변호사 임한결 법률사무소)
- 조미연 /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김재왕 / 변호사(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정다혜 /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 1차 선정위원(36인)

- 강다윤 /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강제인 /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김영미 / 변호사(사단법인 온을)
- 김윤진 /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 박민서 / 변호사(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배광열 / 변호사(사단법인 온을)
- 서치원 / 변호사(법무법인 원곡)
- 심규현 /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이동하 /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이은달 /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지평)
- 이형규 /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임성현 /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지평)
- 장은유 /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정문환 /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정제형 /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 조은별 /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지평)
- 최정규 / 변호사(법무법인 원곡)
- 황재원 /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강송욱 /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 구교은 /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지평)
- 김유라 /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김진영 /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 박순영 /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지평)
- 서창호 / 변호사(법무법인 원곡)
- 손윤서 /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염주민 /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지평)
- 이수연 / 변호사(법조공익모임 나우)
- 이주연 /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 임봉준 / 변호사(경기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임한결 / 변호사(변호사 임한결 법률사무소)
- 전상용 /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지평)
- 정성희 /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조미연 /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조인영 /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표경민 /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 황지현 /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지평)

## 2차 선정위원(12인)

- 강제인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김윤진 /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 서치원 /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
- 이주연 /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 구교은 /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 박순영 /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 이수연 /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
- 임한결 / 변호사 임한결 법률사무소 변호사



- 정문환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조미연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정제형 /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 표경민 /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 최종 선정위원(9인)

- 강송욱 /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 김재왕 /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변호사
- 변재원 / 소수자정책연구원
- 임한결 / 변호사 임한결 법률사무소 변호사
- 표경민 /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 김윤진 /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 김형수 / 장애인 학생지원네트워크 총장
- 이복실 /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센터장
- 제철웅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간사

- 김치훈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
- 김아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간사

- 김영연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센터장

#### 도움을 주신 분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 손고운 / 한겨레21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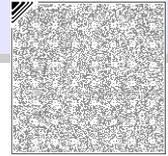
## 선정 대상 판결 및 선정 과정

2023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의 선정 대상 판결은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선고된 건 중 '장애'를 언급한 판결로, 장애와 관련된 사안이 주요하게 다루어진 판결을 모두 선정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민사, 행정소송 판결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총 26곳의 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판결 중 장애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는 방법으로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판결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국 법원 주요 판결 검색 시스템을 활용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이중 수집하였고, 서울지방법호사회의 주요 판결 제보를 통해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판결문 약 5천여 건을 확보하였습니다.

장애를 언급한 판결문 총 5천여 건을 1차적으로 수집 및 선별하기 위해 36명의 공익변호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①판결의 영향력 ②장애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③장애 인권에 대한 이해 총 3개의 항목 당 1~10점까지 점수 부여를 통해 1차 선정에서 추려진 136건의 판결문을 2차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한 개인의 의견만이 반영되지 않도록 최소 2인 이상이 조가 되어 모든 판결문을 꼼꼼하게 분석하였으며 이 중 각 항목에서 평균값 이상 획득한 판결문 21건을 3차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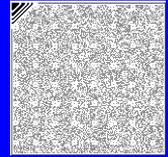
최종 선정에는 1·2차 선정위원으로 참여한 변호사 5인과 학계 및 시민단체 위원 4인이 참여하였습니다. 9명의 선정위원은 각자에게 배정된 21건의 판결문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발제하였고, 3차례에 걸친 대면회의를 통해 디딤돌, 걸림돌, 주목할 판결 후보를 분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해나가는 토론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 인권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디딤돌 판결’ 4건과 장애인 인권증진에 제동을 건 ‘걸림돌 판결’ 6건을 선정하였고, 디딤돌 또는 걸림돌로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많은 고민을 하게 했던 판결인 ‘주목할 판결’ 4건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위원들의 경험과 전문 영역에 따라 의견이 나뉘기도 하였지만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 선정에 이르렀고, 논의 과정에서 나온 모든 의견을 최대한 자료집에 반영하여 본 자료집을 완성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사법 모니터링의 내용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언론사(한겨레21)와 협업하여 보다 생생하게 장애인 인권의 현주소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3 장애인 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에서  
디딤돌 판결로 선정된 판결은  
총 4개 판결입니다.



## 디딤돌 판결

- ❶ 극히 일부의 편의점에만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적용되도록 한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편의점의 범위를 확대한 사례
- ❷ 피성년후견인이 된 검찰공무원의 명예퇴직 부적격 판정과 관련하여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은 위헌이라고 본 결정
- ❸ 혼자서 운전할 수 없으리라는 이유로 전동휠체어 교부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❹ 노인성 질병이 있어 장기요양급여를 받던 65세 미만 장애인이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경우 그에 대한 거부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조항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임을 확인한 사례

## 극히 일부의 편의점에만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적용되도록 한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편의점의 범위를 확대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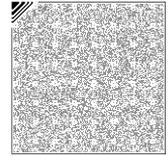
### 사실관계

이 사건은 뇌병변, 지체장애 장애인들 및 영유아를 키우는 원고들이 ① 피고 주식회사 GS리테일에 대하여 장애인 등(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점 통행 편의시설 설치를 청구하고, ②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점은 2019년 기준 전국 1.8%, 서울특별시 1.4%, 7개 대도시 1.3%에 불과하였다. 법원은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규정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는 극히 적은 수의 편의점에 한하여 설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장애인등편의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장애인의 행동자유권 및 접근권을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시설에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되어 있어 장애인의 접근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반면 시설주들의 재정능력 등은 고려하지 않았고, 비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을 차별하는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장애인의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 및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GS리테일의 직영 편의점 66곳 중 편의시설이 설치된 50곳을 제외한 나머지 편의점들 중 2009. 4. 11. 이후 신축/증축된 편의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i)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ii)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또는 휠체어리프트나 경사로), iii)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유효폭과 형태를 가진 출입문을 설치해야 하고,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경우 편의점 내에 간편 설치 및 철거가 가능한 이동식 경사로를 준비하고 일시적 이용을 제공하거나, 편의점 외부에 호출벨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호출 시 직원이 밖으로 나와 장애인이 편의점 내에서 물품을 선별 구매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구매보조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가맹편의점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편의시설 설치 또는 대안적 조치 등의 통일적 영업표준을 마련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2009. 4. 11. 이후 신축/증축된 편의점에 대해서는 위 내용의 영업표준에 따라 점포환경개선을 권고하며, 이를 위한 비용 중 20%를 피고 주식회사 GS리테일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다만, 법원은 국가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민법상 불법행위를 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4424

키워드: #편의시설 접근권 및 행동자유권 #장애인등편의법 #GS리테일설치의무

## 선정의견

• 표경민 변호사

이 판결은 기존 법령을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편의점의 범위를 대폭 확대 해석했다는 점에서 매우 전향적인 판결이다.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의 관점에서, 디딤돌 판결로 선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선정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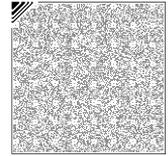
다만 법원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현행 법령은 건물의 바닥 면적과 건축일자를 기준으로 접근권 보장 의무를 제한하고 있고, 이러한 제한 기준은 유엔장애인 권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수차례 인권침해적인 것으로 지적되었으나 개선되지 않은 채 지속되어 오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권을 침해하는 현행 법령 기준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온 것에 대해, 상징적으로라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원고들의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는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고(2022. 10. 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9024 판결),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피성년후견인이 된 검찰공무원의 명예퇴직 부적격 판정과 관련하여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은 위헌이라고 본 결정**

**사실관계**

제청신청인은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피성년후견인이 되었다. 이에 제청신청인은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으나, 검찰총장이 성년후견개시 사실을 이유로 명예퇴직 부적격 판정을 통지 후 당연퇴직 처리하였다. 국가공무원법은 당연퇴직 사유로 피성년후견인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퇴직이 됨에 따라 제청신청인이 기존에 받은 공무원 단체보험금 환수가 문제 되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의 ‘피성년후견인’과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다수의견의 주된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년후견이 개시되지는 않은 동일한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비교할 때 사익의 제한 정도가 과도하다. 둘째, 성년후견이 개시되었어도 정신적 제약을 극복하여 후견이 종료될 수 있다. 셋째, 국가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를 임용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려면 국가공무원이 재직 중 쌓은 지위를 박탈할 정도의 충분한 공익이 인정되어야 한다. 넷째, 성년후견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 국가공무원 입장에서는 심판대상조항 때문에 오히려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를 주저하게 되어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능력을 성년후견인의 지원을 통하여 보완해줌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지원한다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 헌법재판소 2020헌가8

키워드: #국가공무원법 #당연퇴직사유 #성년후견 #위헌법률심판제청

### 선정의견

#### • 임한결 변호사

2013년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다. 정신적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이념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불의하게도 후견이 개시되는 순간 직업이나 자격을 가질 권리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과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아래에서 활용되었던 결격조항들이 이름만 바뀌어 남아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처럼 무성의하게 도입된 피성년후견인들에 대한 권리 박탈적 입법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하였다.

국가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되더라도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지원하는 것이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이다. 이석태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공무수행은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맡겨져야 하지만, 이것이 곧 공직사회를 뛰어난 능력자들로만 이루어진 차갑고 배타적인 엘리트 집단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공직사회란 아무리 보잘것없는 능력이라도 그에 적합한 공무가 있다면 그 능력을 활용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통해 공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직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집단을 지향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명문이다. 능력주의 가치가 광풍이 불고 있는 시대적 현실에서,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 사회국가원리,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의무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선언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 결정이며, 향후 무분별하게 피성년후견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입법에 대하여 위헌성을 다룰 기회를 열었다는 점에서 선정위원 만장일치로 디딤돌 판결에 선정되었다.

## 혼자서 운전할 수 없으리라는 이유로 전동휠체어 교부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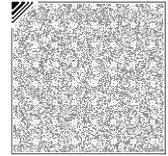
### 사실관계

원고는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면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 해당하였다. 원고는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에게 장애인보조기기 전동휠체어 지원을 신청하면서 보조기기 처방전, 간이정신진단검사가 포함된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지능검사를 다시 받아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를 조력한 시민단체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에 이미 지적능력에 관한 담당의사의 소견과 판단 내용이 있으므로 보조기기 처방전만으로 원고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의료급여사업안 내 지침에 따르면 '지적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동휠체어를 스스로 작동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필요하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보조기기 교부 거부 및 보조기기 구입 총당 의료급여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을 판시하였다.

- 장애인보조기기법령은 의료급여법령을 준용하는데, 의료급여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고, 해당 규정들은 전동휠체어 보험급여 대상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최소한의 교통규칙을 이해하고 전동휠체어의 조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모법이 위임한 급여대상의 범위를 축소하여 급여대상이 되는 전동휠체어를 '자가조종형' 전동휠체어로 한정하고 '보조인 조종형' 전동휠체어를 배제한 것으로, 자가조종능력이 있는 뇌병변장애인과 자가조종능력이 없는 뇌병변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 모법이 실시할 수 있는 급여의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그 범위를 축소하였다고 곧바로 위임범위 일탈이나 입법부작위로 볼 수는 없으나, '보조인 조종형' 전동휠체어를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 조치 내지 이에 관한 부진정입법부작위는 차별취급의 합리성과 비례성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무 규정에도 위배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평등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

- 혹 위 규정들 및 서식이 적법, 유효하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의 지급기준을 모두 충족한 원고에게 거부처분을 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999

키워드: #보조기기 #보조인 조종형 전동휠체어 #자가조종형 전동휠체어 #존댓말판결문

### 선정의견

• 김윤진 변호사

전동휠체어의 경우 사적으로 구입하면 자가 조종 여부 등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데, 공적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엄격한 제한을 받는 것은 전동휠체어의 마련이 장애인의 사적 부담의 영역으로 전가되는 결과를 야기하여 왔다.

대상판결은 관련 법령의 입법 연혁 및 관련 규정의 도입 취지를 두루 살피고, 보조기기 급여가 단순히 개별 급여의 부여 여부를 넘어 돌봄 및 사회보장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제 삶에서 당사자가 처한 상황, 그 상황과 사회 속에서 규정과 처분이 갖는 의미를 심도 있게 고려한 의미 있는 판결임에 선정위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디딤돌 판결로 선정되었다.

또한 (i) 모법 단계가 아닌 시행규칙의 규정 및 적용 단계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모법의 취지 및 범위에 주목하여 시행규칙 단계의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선례로 보인다는 의견, (ii) 법령상 근거가 없더라도 각종 서류를 발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행정청의 규제를 가장한 차별 사례가 많은데 이러한 차별에도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판결의 형식 측면에서도 서론 부분을 존댓말로 작성하고, ‘차별은 공기와 같아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눈을 떠도 보이지 않지만,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은 삶의 모든 순간을 차별과 함께 살아간다. (...) 인간의 존엄은 서로 돕고 의존함을 통해 더 잘 지켜낼 수 있다.’는 문구를 인용하며 헌법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등, 여러모로 재판부의 고민이 판결문 전반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 노인성 질병이 있어 장기요양급여를 받던 65세 미만 장애인이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경우 그에 대한 거부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조항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임을 확인한 사례

### 사실관계

각 사건의 원고는 모두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이자,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각 사건의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요양을 받아왔는데, 이후 각각 2021. 6. 28. 피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과 2021. 6. 24. 피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중 활동보조를 신청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각 사건의 원고가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을 하기 전인 2020. 12. 23.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한 아래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20. 12. 13. 선고 2017헌가 22, 2019헌가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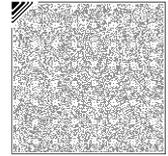
#### 장애인활동법(2011. 1. 4. 법률 제10426호로 제정된 것)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들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각 사건의 피고는 헌법재판소가 위 결정을 하면서 해당 조항에 대하여 2022. 12. 31.까지 잠정적용을 명하였으므로 2021년 당시 현행법상 원고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각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각 피고가 내린 처분은 적용 중지된 법률에 근거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3704/2021구합13698

키워드: #활동지원급여 #장기요양급여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

### 선정의견

• 김윤진 변호사

피고 처분의 근거가 된 개정(※) 전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일 것'을 정하며, 예외적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고 정함으로써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 등에 속하는 사람'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여 왔다. 혹자는 중복수급 방지를 이야기하나, 장기요양급여와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 급여 시간과 같은 급여량 및 구체적 급여 내용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장기요양급여에 비하여 활동지원급여는 그 급여량이 많고 그 급여 내용에 사회활동 참여 지원도 포함되어 있어, 집에서의 일상생활 지원에 초점을 둔 장기요양급여로 대체되기 어렵다. 해당 조항에 대하여 2020. 12. 23. 아래와 같이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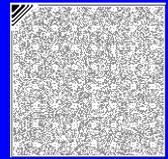
헌법재판소 2020. 10. 23. 선고 2017헌가22, 2019헌가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주 문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1. 4. 법률 제10426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2호 본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가운데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2022.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 행정청은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장애인권 보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이 '계속 적용'될 것을 명하였음을 들어 원고의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행정청의 형식적·기계적 논리에 따른 처분의 하자를 지적함으로써 법원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 선정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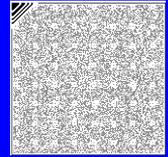
비형벌조항에 대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해당 법률조항 중 ‘잠정적용’ 상태에 있는 부분이 아닌 ‘적용중지’ 상태에 있는 부분의 경우 개선입법이 이루어지거나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난 때에는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는 법리는 기존 판례에도 존재하였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4915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개선입법 및 개정시한 전에도 해당 법률조항을 근거로 이루어진 거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루어진 적이 드물다. 대상판결은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헌법 불합치결정은 법적 공백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일 뿐이며 (중복급여 등이 문제되는 일부 경우 외에는) 해당 조항은 이미 적용중지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본 사안은 급여변경을 신청한 경우로서 중복급여가 문제되지 아니하며, 해당 조항에 근거한 거부처분은 적용중지된 근거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하자가 있어 개선입법 및 개선입법시한 이전 시점이라도 그에 대한 취소판결이 허용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취소판결은 적용중지된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처분을 소극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적용중지 명령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법령의 목적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당사자의 권익을 모두 고려하며 법리를 면밀히 해석·적용하였다는 의의가 있어 선정위원의 만장일치로 디딤돌 판결에 선정되었다.

※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는 2022. 6. 10. 개정되어 2023. 1. 1.부터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 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이용하고 있는 약 2,700여 명의 장애인이 추가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단서 형태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는 요건을 요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2023 장애인 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에서  
걸림돌 판결로 선정된 판결은  
총 6개 판결입니다.



## 결리도 판결

- ① 치료감호를 빙자해 발달장애인을 장기 구금한 것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② 전화로만 가능한 진료예약 및 장애인근로자 채용 면접시험에서의 불합격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③ 청각장애인(구화인)이 정당한 편의제공 미비를 이유로 장애인모집전형 불합격처분취소 등을 청구하였으나 면접 사항은 면접관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제한적으로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 ④ 부모의 이혼 후 부의 주택에서 홀로 거주하던 발달장애인 자녀에게 청구한 소유물 반환청구 소송으로 부가 자녀의 퇴거를 요구하여 인용된 사례
- ⑤ 지적장애인의 일일수입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 ⑥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버스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휠체어 탑승설비와 저상버스 도입을 청구하였으나 차별에 대한 판단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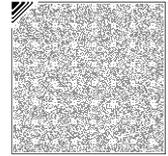
## 치료감호를 빙자해 발달장애인을 장기 구금한 것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사실관계

원고 A는 지적장애인으로 징역 1년 6월의 유죄 판결과 치료감호 판결을 받고 2009년부터 치료감호소에 입소하여 11년 5개월간 있다가 퇴소하였다. 원고 B는 자폐성장애인으로 징역 1년 6월의 유죄 판결과 치료감호 판결을 받고 2020년 치료감호소에 입소하여 1년 4개월간 있다가 퇴소하였다. 원고들은 치료감호소의 부족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열악한 치료 환경,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형식적인 심사,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치료 등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구금되었고, 이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차별행위 또는 국가배상법의 위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치료감호소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수와 치료 환경이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한 바에 미치지 못하지만, 다른 의료인력이 있는 사정을 볼 때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치료 환경 부실이 곧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리고 단순히 심사건수가 과도하다는 사정만으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가중료·종료에 관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들의 발달장애에 대한 완벽한 치료가 불가능하더라도 피고는 정신재활치료나 인지행동치료 등을 병행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치료감호의 가중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국가배상법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 A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 퇴소할 경우 적절한 조력자가 없는 사정을 볼 때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판단이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B의 경우 치료감호소 내에서의 폭력적 행동이 있어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판단이 타당해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치료감호소 내 공무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1913

키워드: #발달장애인 치료감호소 격리 #선고 형보다 긴 치료감호 기간

## 선정의견

• 김재왕 변호사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어야 하고, 장애를 이유로 치료를 강요받아서서는 아니 된다. 우리나라 헌법은 거주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보장하고 있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으면서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는 치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라는 이름으로 장애인을 구금한 것은 그냥 장애인을 가둔 것과 다름없다. 더군다나 그 기간이 법원이 선고한 형량보다 훨씬 긴 상황은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이 판결은 그 심각한 인권 침해를 무시하고 국가에 면죄부를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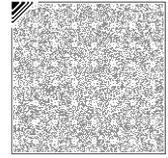
나아가 이 판결은 법원이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 문제가 많다. 원고 A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조력자가 없다는 이유가 구금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이 논리대로라면 조력자가 없는 장애인은 지역사회가 아닌 시설에 갇혀 있어도 괜찮다는 것이다. 법원이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언급을 한 데에 심각한 우려를 거둘 수 없다. 그래서 이 판결은 걸림돌 판결이다.

**전화로만 가능한 진료예약 및 장애인근로자 채용 면접시험에서의 불합격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실관계**

원고는 필담과 수어만 가능한 선천성 중증 청각장애인으로, 피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① 서울대학교 병원 및 D병원 특정교수의 경우 전화로만 진료예약이 가능하니 인터넷으로 진료예약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진정(2019. 8. 19. 자 진정, 이하 '제1진정') 및 ② 창원경상국립대학교 병원 장애인근로자 업무보조 분야에 응시하였지만 청각장애인이어서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로 불합격되는 채용 차별을 겪었다는 진정(2021. 4. 6. 자 진정, 이하 '제2진정')을 각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1. 5. 17. 제1진정에 대하여, 2021. 6. 21. 제2진정에 대한 각 기각결정을 내렸고, 이 사건 법원 또한 기각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제1진정에 대하여, 의료기관은 적절한 예약방식을 선택할 재량이 있고, 전화예약의 경우 대리인에 의한 예약, 또는 수어통역센터, 손말이음센터를 통한 예약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각 병원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제2진정의 경우, 법원은 해당 면접의 최종 합격자 5명 중 1명은 중증 지적장애인이고 불합격자 중 경증 지적장애인 1명이 포함된 점을 들어 원고의 장애를 이유로 원고가 불합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0165

키워드: #중증 청각장애 #진료예약 및 채용에서의 차별 #차별행위입증책임

### 선정의견

#### • 표경민 변호사

우선 병원 진료예약을 전화로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제1진정)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본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은, 1) 대부분의 의료진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예약이 가능하다는 점 및 2) 청각장애인이더라도 대리인이나 수어통역센터 등을 통한 전화예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 진료예약을 할 때에는 환자의 병력을 알고 있는 특정 의료진으로부터 지속적인 진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해당 의료진이 전화예약을 통해서만 진료예약을 받고 있다면 중증 청각장애를 가진 원고의 경우 진료예약에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한 수어통역센터를 통한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센터의 이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장시간 대기해야 하고, 수어통역사가 가능한 시간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급히 진료를 예약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약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고도 이러한 점을 이 사건을 통해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각장애를 가진 원고가 전화로 진료 예약을 해야 할 때 마주하게 될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뒷받침되었더라면 법원의 판단이 달라졌을 수 있겠다는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다.

다음으로 채용 차별 가능성이 제기된 제2진정의 경우, 원고는 본인이 중증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된다는 이유로, 즉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아 불합격된 것이라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중증 지적장애인이 최종 합격된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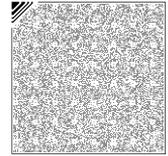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증책임의 배분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소의 취지를 입증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소송법 법리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은 채용 차별의 유무에 대한 증거는 채용권자에게 편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입증책임의 분배를 철저히 적용한다면 원고가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할 위험이 있다. 또한, 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내리는 데 참고한 자료들, 즉 채용을 진행한 창원경상국립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원고에 대한 면접평정표 등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참고하여 차별행위의 유무를 판단해 볼 수 있었을 것인데 이러한 점에 대한 판시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다.

**청각장애인(구화인)이 정당한 편의제공 미비를 이유로 장애인모집전형 불합격처분취소 등을 청구하였으나 면접 사항은 면접관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제한적으로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사실관계**

원고가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의 면접시험에서 피고인 시흥시인사위원회위원장, 시흥시가 정당한 편의제공을 충분히 고지 및 제공하지 않고 면접위원들이 면접시험에서 원고에게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하였다면서 원고의 불합격 처분 취소와 위자료 및 손해 보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에 따라 피고 위원장이 이 사건 면접시험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면접시험 공고에서 장애인 편의지원에 관하여 별도로 공고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시흥시 행정과 인사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편의지원 신청을 하였고, 그 담당자가 면접시험 전에 원고에게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 사항을 전달했고 원고의 편의지원 사항들이 제공되었다. 또한 원고가 수화를 할 수 없다거나 구화인이라는 사실까지 면접위원들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하거나 장애 특성에 대한 사전 고지가 불충분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원고는 구화인으로서 면접위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투명마스크를 쓰게 해달라거나, 질문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때 필담면접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양방향 필담면접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은 것은 편의제공으로서 다소 불충분하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피고들에게 면접위원의 투명마스크 착용이나 화상면접 등의 편의제공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공무원 임용에서 임용신청자에 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위법하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4076

키워드: #청각장애인차별행위 #편의지원미제공

## 선정의견

• 김형수 총장

무엇보다 이 판결은 입술을 읽어야 할 구화인의 장애 특성과 의사소통의 개별적 권한을 부정한 판결이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무시한 행정적·절차적 정당성만 따져본 기계적 판결로서 큰 문제가 있다. 특히 '정당한 편의제공'은 기계적인 편의 제공이 아니라 개별적인 장애인의 특성과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한 바, 이를 이미 구화인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전제한 채로 판결한 사건이다. 구화인에게 다른 사람들의 얼굴과 입술을 보는 것은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권리인데 이를 사전 고지하는 것도 원고가 그 특성을 이해하는 것도 정당한지 판단하지 않았다. 이런 면접관의 차별행위와 선입관에 대하여 공적 영역에서 조차 자유재량으로 해석함으로써 국가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의 책무성을 외면한 판례를 남긴 최악의 걸림돌 판결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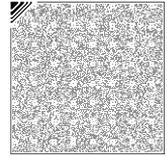
## 부모의 이혼 후 부의 주택에서 홀로 거주하던 발달장애인 자녀에게 청구한 소유물 반환청구 소송으로 부가 자녀의 퇴거를 요구하여 인용된 사례

### 사실관계

원고는 아버지이며, 피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 자녀이다. 피고는 2002. 6. 18.부터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서 거주하였으며, 2021. 10월 즈음 부모의 이혼 후 어머니와 동생이 다른 장소로 전입한 이후 혼자 생활하였다.

원고인 아버지는 상당한 자산가이며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는 여유가 있지만, 그의 아들인 자신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고, 비록 성년이지만 자력으로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피고는 주장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생활의 근거지를 박탈하고 부양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복지관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있고, 2021년 총 77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현재 원고의 부동산에서 특별한 문제없이 혼자 생활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부양의무를 고려하더라도 그 부양의무의 이행이 반드시 생활 근거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요청이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퇴거를 요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선정의견

### • 이복실 센터장

본 판결은 다음의 이유로 걸림돌로 선정하였다.

첫째, 법원이 주장하는 성년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에 대한 민법 조항은 비장애인 성년인 자녀에게 적용되는 부양의무 기준을 동일하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 자녀가 성인이지만 발달장애를 가졌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판결이며, 장애 특성에 대한 민감성이 낮고, 원고의 소유권에 보다 집중하고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음.

둘째, 법원은 피고가 근로활동을 하고 일정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피고의 연소득이 770만원에 불과한데도, 원고 청구를 인용할 근거가 되지 못하는 점과 피고가 어느 정도로 보호를 요하는 상태에 있는지, 또 현재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고 있는 부양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이 급여수준이 성인 발달장애인이 현재의 근거지를 벗어나 혼자 생활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비판적 고려가 전혀 없음.

셋째,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부가 성인이지만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의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유기에 해당되는 즉, 학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특히 자폐성장장애인에게 20여 년을 살아온 집이라는 공간의 환경변화는 상당한 스트레스 요인이며 불안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 주거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함. 부의 자녀 유기를 용인하는 판결로 인해 발달장애인이 최종적으로 시설로 가는 루트가 될 우려도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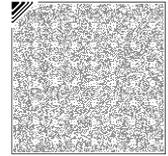
위와 같은 제반 요건을 고려할 때 본 판결은 걸림돌로 선정되기에 충분하였다.

## 지적장애인의 일일수입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사실관계

원고들은 지적장애인인 망인의 유족들이다. 망인은 피고 A가 운영하는 미신고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하다가 피고A의 지시를 받던 활동지원사의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들은 피고 A와 그가 운영하던 미신고 시설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평택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 A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 평택시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70%로 제한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법령 위반 및 예견 가능성을 부정하며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7547/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12414

키워드: #지적장애인일일수입

## 선정의견

• 김재왕 변호사

장애가 없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보통 일일수입이 인정된다. 이 사건과 같이 사망에 대한 손해 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망인이 생존하였을 경우 벌 수 있는 수입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한다. 이를 일일수입이라고 한다. 망인이 소득 활동을 하였던 경우에는 그 소득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용노임으로 산정한다. 장애가 없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망인이 생존하였을 경우 실제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일수입을 인정한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직업이 없더라도, 또는 직업을 구할 의지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장애가 없는 사람은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사건에서 사망한 사람은 지적장애인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장애가 없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와는 다르게 망인이 실제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사하였다. 그리고 그가 노동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생존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과연 그러한가.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여 예전에는 소득을 얻을 수 없었던 활동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노래를 부르거나, 음식을 먹는 장면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으로도 돈을 버는 시대이다. 그렇다면 지적장애가 있고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이 앞으로 소득을 얻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환경에 따라 노동능력은 충분히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관리감독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장애가 없는 사람과 다르게 장애인의 노동능력을 엄격히 심사하고, 그 노동능력이 없다고 쉽게 단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퇴색하였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2023다214085). 장애인의 노동능력을 오직 그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서만 판단하는 법원의 시각이 걸림돌이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버스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휠체어 탑승설비와 저상버스 도입을 청구하였으나 차별에 대한 판단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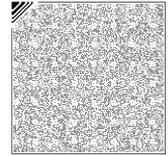
**사실관계**

원고들은 휠체어 사용자 또는 무릎 관절의 장애로 승하차용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려운 장애인이며 피고들은 시내·시외버스 사업자(이하 '버스회사'),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경기도(이하 '국가')이다. 원고들은 버스회사가 저상버스를 전면 도입하지 않고, 휠체어 탑승설비도 장착되어 있지 않은 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차별행위의 시정과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아래와 같이 대법원은 5가지 쟁점을 판단했다.

첫째, 원고들과 버스회사 사이에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의 존재 여부이다. 대법원은 '비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므로,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의 존재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여 장애인이 무익한 노력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둘째, 버스회사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이고, 그 차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이다. 차별로 보지 않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누구든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셋째, 그렇다면, 버스회사에 '즉시', '모든'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도록 명한 원심판결이 타당한지이다. 대법원은 여기서 비례의 원칙을 들어 심사했다. 원칙적으로, 적극적 조치 청구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 피고가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에 따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적극적 조치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때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비례의 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원이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때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사인(私人)인 피고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때는 피고의 재정상태, 재정 부담의 정도, 피고가 적극적 조치 의무를 이행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인적·



## 사실관계

물적 지원 규모, 상대적으로 재정 부담이 적은 대체 수단이 있는지, 피고가 차별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버스회사가 운행하는 노선 중 원고들이 향후 탑승할 구체적·현실적인 개연성이 있는 노선, 버스회사의 재정상태 등을 심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대상 버스와 그 의무 이행기 등을 정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넷째, 버스회사가 원고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로 “저상버스”까지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교통약자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에는 승하차 편의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저상버스의 도입에 관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었다.

다섯째, 버스회사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국가는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 영역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제4조 제1항과 제19조의 각 항에서 열거한 차별행위의 유형에 포섭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국가의 지도·감독 소홀은 그 자체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열거한 차별행위의 유형에 포섭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었다.

대법원 2019다217421

키워드: #시외이동권 #차별구제소송 #대법원판례

## 선정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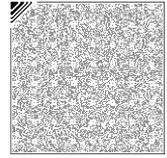
### • 임한결 변호사

대상판결은 사실상 대법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소송(이하 ‘차별구제소송’)의 다양한 쟁점을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다. 언뜻 보면 “장애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감수성”,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 이행” 등의 문구로 좋은 판결문 같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차별구제소송의 실무를 할수록 대상판결은 제대로 결림돌 노릇을 하고 있다.

첫째, 장애인 차별행위의 영역 및 수단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조항을 한정적인 것으로 해석했다. 이로써 저상버스의 도입,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전혀 무관한 것이 되었다. 단순한 입법불비를 마치 차별의 영역과 수단을 한정적으로 규제하고자 한 입법적 결단으로 오독한 셈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9조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법원의 장애인 차별 판단 영역이 국가인권위원회보다도 좁다고 보았다.

둘째, 국가의 감독·지원·교육 등의 의무는 아무리 소홀히 하여도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사인의 장애인 차별은 국가의 지원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다는 아량을 베풀어 주는 한편, 국가의 의무불이행은 차별유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장애인권을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하는 권리는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의 다양한 유형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국가의 차별행위를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국가책임을 상당히 덜어준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셋째, 소송요건이라는 입구는 넓혔으나 인용범위라는 출구는 작게 만들어 버렸다. 대상판결은 버스회사가 운영하는 노선 중 원고들이 향후 탑승할 구체적·현실적인 개인성이 있는 노선에 대하여만 차별시정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직장 소재지, 거주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이다. 인간의 이동은 모두 직장 소재지와 거주지만 한정되지 않는다. 심지어 직장 과 거주지는 언제든 바뀔 수도 있다.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점은 매번 소송을 할 순 없으니 넓게 보자고 했으나, 결국에는 매번 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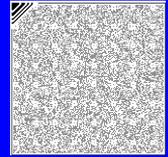


## 선정의견

시민의 발과 같은 버스는 국가의 세금 지원으로 운영되는 일종의 공공재이다. 세금은 비장애인만 내는 것이 아니다. 대상판결은 국가의 법적책임을 면제했다. 그러면서 세금 지원을 받는 버스회사의 재정부담은 세심하게 살피도록 했다. 심지어 버스회사가 저상버스를 한 대도 도입하지 않더라도 장애인 차별이 아니다. 판결로써 장애인을 차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였다. 이에 선정위원 만장일치로 결림돌 판결에 선정되었다.



2023 장애인 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에서  
주목할 판결로 선정된 판결은  
총 4개 판결입니다.



## 주목할 판결

- ❶ 사법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한 '읽기 쉬운 (Easy-Read)' 방식의 첫 판결문이었으나, 정작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장애인 채용차별과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은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❷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후속 조치계획이 미비한 상황에서 운영자가 추진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신고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❸ 정신병원이 비자의입원 목적 이송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에 관해 직접원인 중심으로 판단한 사례
- ❹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대한 적극적, 실질적인 해석을 통하여 장애를 인정한 사례

## 사법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한 ‘읽기 쉬운 (Easy-Read)’ 방식의 첫 판결문이었으나, 정작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장애인 채용차별과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은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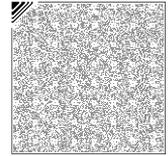
### 사실관계

선천성 중증 청각장애인 원고(수어를 모국어로 쓰는 농아인으로 사료됨)는 본인이 참여한 2022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모집공고에서 불합격처분이 되었다. 청각장애인 신청자 17명 중 경증 청각장애인만 전일제 일자리에 합격한 반면, 원고와 같은 중증 청각장애인은 한 명도 합격하지 못한바, 피고(강동구청장)가 처음부터 중증 청각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을 의도로 차별한 것이 위법하다며 서울 강동구청장에게 불합격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피고가 “중증 장애인인 원고에게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불리한 조건 하에서 면접을 하는 등 불공정하게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수어통역 등을 거쳐야 하는 청각장애인임을 감안하더라도 각자에게 주어진 면접 20분이라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서 위법한 차별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

또 “면접 전에 수어통역사를 미리 만나게 배치하지 않은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없고 원고뿐 아니라 다른 청각장애인들에 대하여도 면접 전에 수어통역사를 미리 만나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았으며 통상 장애인일자리사업에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지원하므로 위와 같은 중증 청각장애인의 합격 비율로, 채용절차에서 위법하게 차별받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고 측의 탄원으로 ‘읽기 쉬운 (Easy-Read)’ 방식을 적용한 판결문을 주문하고, 이를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9381

키워드: #이지리드판결 #장애인일자리사업

## 선정의견

• 김형수 총장

이 판결은 사상 최초로 장애인 등을 위한 '쉬운 판결문'을 도입한 판결로서 그것을 장애인 당사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다른 판결문 작성에도 유효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며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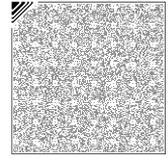
원고 장애인 당사자가 비록 패소하긴 했으나 각종 선발 과정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조력이나 지원이 어떻게 그 법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판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대로 피고가 중증 장애인을 선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해서 피고의 그동안의 장애인 선발에서의 통계와 정당한 편의제공으로서의 수어 통역 지원이 충분했는지를 살피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수어 통역 지원을 포함한 20분의 면접 시간이 재판부가 판단한 정당한 지원이었느냐는 근거 제시 역시 부족하였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사법 접근 향상을 위해 재판부가 특별히 노력한 것을 충분히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어 주목할 판결로 선정하였다.

##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후속 조치계획이 미비한 상황에서 운영자가 추진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신고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사실관계

원고는 경기도 이천시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해온 사회복지법인이다. 원고는 2021. 3. 31. 운영 중인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며, 이유로 장애인 탈시설정책의 동참, 거주인 1인당 생활 공간 면적 반영을 위한 건물 증축의 재정 능력 부족, 정부 보조금 외 전무한 수입과 시설지도 점검지침에 따른 후원활동 제한으로 인한 유지의 어려움, 시설 폐지 후 노인 주간보호센터 시설의 신규 설립 계획 등을 제시했다. 피고는 2021. 9. 9. 원고의 시설 폐지 신고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신고서 보완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끝내 ‘기존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 보완이 충족되지 않아 폐지 신고를 반려 처분하였다. 결국 원고는 피고가 2021. 9. 9.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인복지시설 폐지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할 것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근거를 주장했다. 첫 번째로, 원고는 피고로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폐지신고를 할 경우 시설 이용 장애인을 다른 시설로 옮기는 데 협조하고 그 과정에서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가 위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할 뿐이지 폐지신고 자체를 반려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두 번째로, 원고는 피고가 보호자의 시설폐지를 반대한다는 이유 또는 동의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을 처분한 것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려 사유로 위법함을 주장했다. 세 번째로, 원고는 피고에게 시설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후 그 내용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가능한 최선을 다하여 전원조치계획을 작성 및 제출하였음에도 장애인복지법에서 명시한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폐지 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4차례에 걸쳐 폐지 신고에 따른 보완서류 작성 등 보완통보를 하였으며, 시설거주자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조치계획서를 요구했음에도 끝내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 폐지의 적절한 조치 및 계획 수립의 의무를 강조하고,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시설 이용자와 보호자에 시설 폐지를 안내하고 동의를 물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시설을 옮기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이행 계획을 보이지 못했다고 보았으므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5208

키워드: #탈시설 #시설폐지

## 선정의견

### • 변재원 활동가

운영자가 사업 운영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결정한 시설폐지를 곧 탈시설 조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암시하는 데 본 사건이 갖는 의미가 크다. 당시 원고가 제시한 네 가지 이유 중 재정상의 어려움과 더불어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시설폐지의 적법성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시한 추상적인 수준의 전원조치계획을 인정하지 않고 보다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기존 시설 입소 장애인 거주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될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함의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시설 폐지 시 기존 거주자의 지역사회 자립 생활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을 묻지 않고, 대신하여 정원에 따른 전원 조치 계획만을 우선 염두한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나아가 재판부의 입장에서 보호자중심주의적 시각이 비추어지는 점 역시 우려할만한 사안이다. 시설 퇴소 과정에 있어 보호자의 전원 희망 여부 및 협조를 구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문제는 자칫 시설 퇴소의 권한이 입소인이 아닌 보호자에 의해 좌우되는 것처럼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설 입소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승인 여부에 따라 사실상 영구적인 시설 거주 처지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본 사안은 탈시설이 사업의 용어가 아니라 권리의 용어로서, 시설 운영자가 경제적 사유 및 사업 변경의 이유 등을 합리화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주지한 점에 있어 의미를 갖지만, 시설 폐지 이후 지역사회 자립의 권리를 충분히 도출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시설 입퇴소에 있어 보호자의 협조 및 동의를 결정적으로 판단하는 점에 있어 자기결정권 침해의 소지 등 판결의 한계를 동시에 보인다. 이에 주목할 판결로 정하였다.

## 정신병원이 비자의입원 목적 이송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에 관해 직접원인 중심으로 판단한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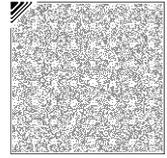
### 사실관계

조현병과 알콜중독이 있는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D 병원(피고)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원고의 동생 E, F는 2018.2.6. 주취상태에 있는 원고를 다시 D 병원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절차로 입원시키기 위해 D 병원에서 유료로 운영하는 인력과 차량을 요청하였다. 피고의 환자 이송 담당 직원 2명은 원고가 있던 단독주택 3층에서 지상에 주차된 구급차량으로 원고를 이송하고자 하였는데 주취 상태에 있던 원고가 발버둥을 치던 중 단독주택 2층까지 내려왔을 무렵 미끄러져 난간을 통하여 1층 도로로 추락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사고로 양쪽 족부 발꿈치뼈 골절상을 입었고 양측 발목관절운동 저하에 의한 관절 강직의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 이송 중인 환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피고는 이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위 직원들이 원고를 30분간 설득하여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에 탑승하기로 동의를 얻어 원고와 함께 2층 현관을 나서 외부계단을 통해 내려오던 중 병원 밖에서 신체결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고를 부축하여 계단을 내려오던 중 원고가 갑자기 피고 직원을 밀치고 계단 2층 난간에서 1층으로 뛰어 내려부상을 입은 것이어서 이는 원고의 자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20일간 연속해서 술을 마셔 만취상태에서 자던 중 형제들의 신청으로 이송차량과 직원이 와서 원고를 이송하려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피고 직원들이 원고를 결박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하였다. 법원은 추락과정에 관한 원고와 피고 직원의 상반된 증언에 대해 피고직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후 법원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적 제한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고, 입원 방식은 자의입원이 우선된다고 할 것이며,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응급입원의 경우가 아닌 한 피고의 직원이 정신의료기관 밖에서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결박한 채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수 없다고 할 것



## 사실관계

이다. 따라서 피고의 직원이 입원에 동의한 원고를 부축하여 구급차량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신체를 완전히 결박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탈하여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돌출행동을 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 하여 피고의 직원에게 어떠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손해의 액수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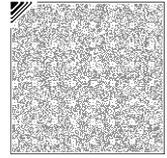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8924

키워드: #강제입원 #이송중신체결박

## 선정의견

• 제철웅 교수

이 판결은 정신병원 입원을 위한 이송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변호사나 법관이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알콜중독이나 우울증 등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힘들어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자녀나 형제자매 등 가족들은 정신질환자를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욱 중독상태가 지속되거나 우울증 등이 지속되면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강제로라도 입원시키려고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가족의 대응은 매우 미숙한 대응이다. 강제로 입원치료를 받는 정신질환자나 알콜중독자가 완치되어 퇴원하면 모르겠으나 절대 다수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강제입원과정이 이들에게 정서적 트라우마로 남게된다. 강제로라도 입원시켜 치료해 줄 것을 요청하는 비전문가인 가족의 심정은 백번이고 이해할 수 있으나, 정신과전문이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자라면 정신질환자나 중독환자의 이런 심리상태를 충분히 이해하고 가족들에게 적절한 대응방법을 조언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과정 없이 이 사건의 형제들의 입원을 위한 이송요청을 실행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다. 이미 피고 병원에 수차례의 (강제) 장기입원의 경험이 있는 원고가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할 것이라는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그런 중독환자/정신질환자에게 30분의 설득으로 병원입원을 위한 구급차에 탈 수 있다고 믿고 같이 계단을 내려오는 것이 매우 비전문가적인 행동이라 할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환자라는 것이다. 특히 원고는 가족들의 속을 썩였겠지만 응급입원이나 강제입원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보여주는 사실관계는 없다. 따라서 형제가 상당한 정도의 자해, 타해의 위험이 현재 있거나 임박했다는 진술을 하면서 요청하지 않거나 원고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이송편의를 봐달라는 것이 없는 한 구급차를 보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전자의 경우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위 두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때, 그러나 가족들이 입원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로서 그 가족들에게 환자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세심하게 배려하여 알려주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공적 서비스전달체계에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정신질환자/중독환자를 설득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사건의 피고의 행위는 구급대를 보낸 행위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할



## 선정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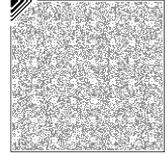
것이고, 그 이후에 돌발적으로 생긴 원고의 사고는 피고의 과실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판결이 주목받아야 할 것은 '가족들이 느끼는 고통'에 대해 정신건강서비스제공자 또는 정신건강전문가가 어떻게 가족들을 지원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윤리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켜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언제나 중독환자 또는 정신질환자의 '트라우마 정보를 이해한 상태'에서 접근하는 것이 직업윤리로 확산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전문가는 환자의 심리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들을 기계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이 이 판결에서 잘 드러난다.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켜야 할 시점이라 할 것이다.

##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대한 적극적, 실질적인 해석을 통하여 장애를 인정한 사례

### 사실관계

원고는 2015. 4. 17. 교통사고를 당해 좌측 손과 손목에 압력에 의한 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피고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2. 29. 원고의 장애등급을 직권으로 재심사하였고, 소견서, 방사선 영상자료,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좌측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손가락을 쓸 수 없는 장애가 남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애등급을 4급 9호로 결정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이상의 손가락을 쓸 수 없는 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장애등급 3급 8호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좌측 엄지손가락의 운동가능범위가 정상범위의 50%에 미달하므로 이는 장애등급 4급 9호가 아닌 장애등급 3급 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결정을 취소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된 근거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① 원고가 엄지손가락은 그 자체로는 수동 및 능동운동에 의한 구부림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원고가 엄지손가락을 구부리려고 할 때 두 번째 검지손가락이 엄지손가락과 맞닿게 되어 검사자 등 제3자가 개입하여 검지손가락을 수동운동으로 젖혀 엄지손가락의 구부림 반경에서 떼어놓지 않으면 엄지손가락 관절을 구부리는 것은 구조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는 정상운동가능범위보다 50% 이상 감소된 상태로 평가해야 한다. ② 원고의 엄지손가락 장애는 형식적으로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원고에게 유리한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범위를 적용할 수 있는 사유(심한 운동신경 손상으로 마비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관절의 기능장애의 경우 그 발생 원인을 무시한 기계적인 측정은 노동능력의 저하 정도를 판정하는 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장애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거나, 관절 각도는 신경증, 히스테리 등 기능적 장애에 의한 것도 포함되므로 각도 측정 시 장애 원인을 조사하고 그 증상에 따라 측정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엄지손가락 장애의 정도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범위가 적용되는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원고의 엄지손가락 장애의 원인은



## 사실관계

신체의 기질적 변화임이 명확하므로,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범위를 적용하여야 원고의 실제 장애 상태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④ 장애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감소되어 발생하는 일실수입 손해를 보전해 주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원고는 좌측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활동에 거의 기여할 수 없으므로, 노동력 감소·제한의 측면에서도 원고의 엄지손가락은 운동기능 장애로 인해 손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2022

키워드: #장애등급판정 #장애심사

### 선정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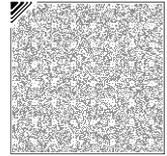
• 강송욱 변호사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의 개념에 대해 전문(前文)에서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들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장애의 개념도 단순히 의료적인 측면에서 신체나 정신의 손상으로 보는 입장에서 벗어나 장애로 인한 사회활동 참여의 배제·제한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장애를 바라보는 보편적인 시각이나, 장애등급 판정기준과 관련된 많은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아직 의료적 결과에 기댄 기계적 판단에 머무는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대상판결과 함께 논의된 대전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1구합100228 사건의 경우, 샤르코-마리-투스병 진단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에서 정한 일률적인 의학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거나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 2022. 7. 6. 선고 2020구단 129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7. 6. 선고 2021구단63689 사건 등에서도 법원은 신체감정 결과나 주치의 소견서 등 해부학적, 의학적 관점에서의 증거만을 근거로 삼은 원고의 장애가 사회적 환경에서 어떠한 맥락을 가질 것인지 등을 고려하는 종합적인 판단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상판결을 주목할 판결로 선정한 이유는 위와 같은 법원의 전형적인 모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원고의 장애를 실질적·기능적으로 살피고, 고시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하여 장애인인 원고의 권리보장에 더욱 중점을 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다. 비록 의학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으나, 국민연금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원고의 장애가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의미를 고려하는 등 보다 보편적인 장애 개념에 다가가고자 노력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선정의견

장애판정과 관련하여 법원이 고시 등 제도적인 기준이 정한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규칙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 법원이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획일적이고 의료적인 판단기준인 고시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중점을 두고 장애를 평가하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이는 장애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큰 의미를 갖는 판결이 될 것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장애 판단에 의학적 소견은 일부분만 반영되고, 장애인의 사회생활 가능 여부 등 사회적 측면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지난 2022년 9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권해를 통해 대한민국에 대하여 장애인권모델을 반영하여 장애평가시스템을 변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법원 본연의 임무를 생각하면 장애판정에 관한 법원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



## 2023 장애인 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발행일** 2023. 10. 31.

**집필** 2023 장애인 인권 디딤돌 걸림돌 선정위원회

**발행처**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303호

**전화** 02-2675-8153 **팩스** 02-2675-8675

**후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제작** 리드릭 02-2269-1919

**ISBN** 979-11-92957-04-3